

■ 판례 동향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품목분류 동향

바닥갈개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 제조업의 강점 ‘저탄소’, 우리의 위치는?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1월 25일(통권 제2108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미래 제조업의 강점 '저탄소', 우리의 위치는?

06 Weekly News**12 현장 특파원****관세행정실무해설**

- 18 관세행정안내
역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 25 질의응답사례
생와사비 뿌리의 수입요건

관례동향

- 28 관세판례해설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

품목분류동향

- 45 품목분류해설
바닥깔개의 품목분류
- 59 세번 바로잡기
칠판 지우개
- 61 상식 밖의 상품학
무인 무 수확기 등장

최신개정법령

- 64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미래 제조업의 강점 '저탄소', 우리의 위치는?

무역협회, 韓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환금융 체계 마련, 민간자본 활용 확대 제언

경쟁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저탄소 전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11월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년 기준 2억 3,890만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3개 업종은 전체 산업 분야 배출량의 73.0%(2022년 잠정치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나타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철강·시멘트·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것은 단순히 배출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타 산업의 기초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반 산업으로, 이들의 저탄소 전환 성공 여부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역량과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철강·시멘트·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이들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혁신 기술을 통한 생산방식 변경 및 설비 교체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제조설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어 설비 교체 한계비용이 높다고 지적했다.

독일, 미국, 일본은 산업화가 오래전에 추진돼 이미 투자비 회수가 종료된 노후 설비 교체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설비 투자가 진행돼 향후 20~30년 간 설비 가동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매몰비용과 좌초자산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보고서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다배출 산업 관련 투자,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탄소 전환 속도는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은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수소환원 제철, 화학 분야 가열공정 연료 및 원료 전환, 시멘트 공정 원료 대체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산업(화학, 정제, 철강, 식음료, 시멘트)의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별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63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 규모의 산업 실증 프로그램(Industrial Demonstrations Program)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국내와 EU 자금을 두루 활용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가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감축 투자를 유인하는 지원 제도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도입해 기업의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GX)'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전환금융 체계를 2021년

부터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9월 ‘30·60 쌍탄소전략’을 선언하고, ‘1+N’ 정책체계를 구축해 2060 탄소중립 목표 아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녹색 전환 가속화 계획을 발표해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환금융 표준 연구 및 공식화를 예고했다.

● 주요국 저탄소 전환 지원정책 비교 ●

국가	지원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실증사업 시행 • 기술 개발 로드맵 기반 자금 지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생산량 통제 및 탄소 총배출량 규제 • 기술혁신 가속화 • 전환금융 체계구축 공식화 예고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FD 시행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 • 수소 활용 산업 탈탄소화 추진 • 다양한 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프로그램 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화석에너지 전환을 통한 제조업 구조 전환 • 민관자금을 활용해 저탄소 전환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환금융 활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로드맵 기반 기술 개발 • 기술 개발 투자 세액공제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R&D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 규모나 제도 측면에서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정책 예측성 및 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민간 금융기관이 탄소 다배출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전환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자국의 제조업 분야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 전환 정책과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전환 정책도 단순한 탄소배출 감축 차원을 넘어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특허청, K-브랜드 육성 위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 발간

지재권 전문인력 부족한 중소기업의 K-브랜드 육성 도움될 전망

특허청은 11월 21일 중소기업의 K-브랜드 확보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16만여 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피해 범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일본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글로벌 상표검색 길라잡이, ▲일본 상표검색 길라잡이,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으로 발간됐다.

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전 세계 특허청과 연계된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한 세계 각국별 출원·등록상표의 검색 방법이 수록돼 있다. 또한 GBD 상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과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에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의 사용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표 검색 방법을 수록해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도용 검색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모든 길라잡이는 실제 검색화면 이미지를 중심으로 30쪽 내외의 설명과 그림으로 제작해 이용자의 가독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검색은 출원 단계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이후에는 모방상표 검색을 통해 자신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유용한 도구"라며, "이번 길라잡이를 통해 지재권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K-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길라잡이 3종은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관련 교육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방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EU 수산식품 시장개척 '파리 무역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가 프랑스 파리에 마련됐다. 최근 EU 권역의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11월 20일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그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美·中·日 3개국에 집중된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 성장세보다 EU 권역 수출이 연평균 8%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했다.

유럽 및 중동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유럽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과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며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의 유럽·중동 진출 시 조기 정착을 위한 현지 사무공간 및 업무 지원,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바르셀로나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및 무역상담회 운영을 통한 수산식품 인지도 제고 및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통·번역 지원,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등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K-SURE, 글로벌 수출금융으로 해외 현지법인 직접지원 개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은행이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됐다.

K-SURE는 11월 18일 수출기업과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법인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매출보험 출시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매출보험은 K-SURE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은행이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K-SURE는 이번 신상품 출시로 현지법인들이 K-SURE의 보험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현지법인의 금융조달 경쟁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으로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거래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돼 대손충당금설정(부채) 부담이 줄고, 이는 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현지법인과 은행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셈이라고 소개했다.

| 하구현 기자 |

페루서 오징어·붕장어 수입 시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가능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 페루 수산물의 수입신고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SANIPES)과 韓·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올해 1월 시행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로 ▲전자위생증명 송수신 시스템 개발·연계 협력, ▲전자위생증명서 통합 서식 및 정보보호 방안 등 협의, ▲원활한 전자위생증명서 유통을 위한 상호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하게 된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2025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돼 간편하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어 페루産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페루는 필리핀(2022년 6월), 칠레(2022년 8월), 노르웨이(2023년 5월)에 이어 우리나라와 네 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국가가 됐다. KOTRA에 따르면 페루는 수산물 주요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오징어와 붕장어 국내 수입량 1위로 전체 오징어 수입량의 45%, 붕장어 수입량의 75%가 페루産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KOLAS 식물검역 분야 인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바이러스·세균·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6개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고 11월 14일 전했다.

이번에 인정받은 분야는 식물바이러스 2종, 식물세균 2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종으로, 해당 분야에서 국제기준(ISO/IEC 17025)에 적합한 기술과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2023년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입 현장 식물검역을 수행하는 6개 지역본부(인천공항, 영남, 중부, 서울, 호남, 제주) 중에서는 첫 번째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앞으로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공인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안용덕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수출입 식물 병원균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고 국제적인 시험기술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김성은 기자 |

15분이면 가짜 한우 판별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원산지 확인 키트 개발

쇠고기가 한우고기가 맞는지 15분 만에 알려주는 휴대용 원산지 판별 키트가 나왔다. 원산지 단속 현장에서 한우로 둔갑한 수입 쇠고기를 바로 잡아낼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 원산지를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개발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2021년도 0.3g의 돼지고기를 이용해 5분 내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낸 연구 성과다.

● 쇠고기 원산지 판별 방법 비교 ●

구분	기존 방법	신규 개발 방법
분석 기간	3일	15분
분석 비용	3만원	1만원
시료량	20g	0.1g
장소	전문 실험실	단속 현장
판별 장치	전문가용 고가 장비	소형 장비와 스마트폰

기존에는 쇠고기 원산지를 판별하려면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 기간 3일, 분석 비용 3만원, 시료량 20g이 소요됐지만,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사용하면 기존의 3분의 1 가격으로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할 수 있다. 검사 대상 쇠고기 시료 0.1g을 분리해 DNA를 추출한 뒤 시약과 섞어 유전자 증폭기에 돌리면 된다.



키트 사용 절차(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 판별 키트는 DNA 추출 시약, 증폭시키는 시약, 유전자 증폭기, 그리고 판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 절차와 소요 시간, 비용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100% 산양유’ 알고 보니 1.5%만 함유 …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

우유에 소량의 산양유 혼합해 수입한 뒤 18억 원 상당 판매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로 속인 일당 7명이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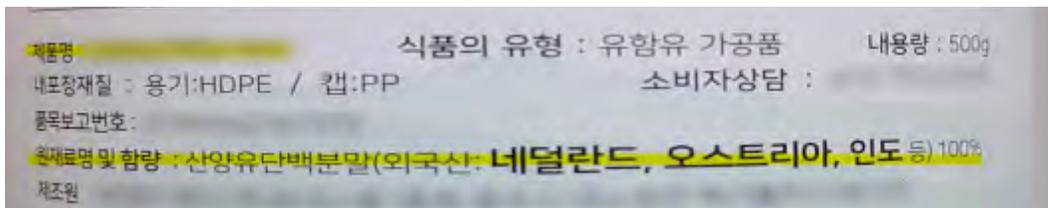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소량 담은 분말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11월, 시중에 유통되는 인도産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우유가 섞여 있음을 확인했다. 산양유는 우유보다 소화가 더 잘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일당들이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社와 B社 대표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우유(98.5%)와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합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36톤 상당을 반입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社에 불법 수입한 인도産 유합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 단백질 100%’ 등 완제품 43톤을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18억 원 상당) 유통·판매했다.

게다가 C社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B社가 제공한 인도産 유합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가량 저렴한 분리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해 위반 제품 26톤(위반 제품 총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양유단백분말 100%’로 거짓 표시했으며, ‘우유’ 함유 사실 미표시(출처 : 식약처)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했다.

| 김성은 기자 |

중기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100개社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新사업·新시장 진출 계획이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제한은 없다.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사업화 비용 등에 활용이 가능한 오픈바우처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5,000만원, 3년간 7억 5,000만원 규모로 발급한다. 투자유치와 수출·현지화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와 더불어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VC·CVC·PE 등 글로벌 투자사, 해외기업·바이어 등과 만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출금융, 대규모 R&D 등은 기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속옷에 컵라면 용기까지 ... 외래생물 꼼꼼 숨겨온 일당 검거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을 포함해 19억 원 상당의 외래생물을 해외에서 밀수입해 온 일당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해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 수사를 확대한 결과 밀수해 보관 중이던 외래생물도 압수했다. 압수한 외래생물의 종류는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생물도 있었다.

이들 밀수 일당은 외래생물을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입 전력이 있는 주범들은 지인들을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포섭해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세관은 압수한 외래생물 중 살아있는 개체는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전했다.

식약처, 호주·가나와 의료제품 등 규제협력 교류 강화 MOU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주 연방치료제품청(TGA) 및 가나 식품의약품청(GFDA)과 의료제품 분야 등 규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호주 TGA와 MOU 체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 규제기관과 의약품 분야 법령·제도 및 심사 경험 등을 교류하며 혁신적인 의료제품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가나 GFDA와 식품,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안전과 기술적 지식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MOU를 체결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아프리카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진출 K-기업 '엔바운드·절약지향 소비' 노려야

올해 10월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2대에 이어 103대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일본에 새로운 변혁의 기운이 돌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이시바 총리가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만큼 韓日관계는 물론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韓日 교역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구조가 유지된 만년 '적자국'이다. 본지는 이시바 내각 출범에 따른 일본의 경제 정책 전망과 현재 경제 상황, 우리 수출입기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일본 중의원 선거를 4일 앞둔 10월 2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일본 신임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와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이창민 교수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이시바 총리의 태도 덕분에 향후 韓日 관계는 순풍이 예상되나 경제협력에 있어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일본 신임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와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 토론 중인 패널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11월 1일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을 발표하며 고물가에 대응하고자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이며,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첨단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무역협회 세미나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 연구위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시바 내각 또한 전임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보 정책을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0월 4일 연설에서 이시다 총리는 반도체 등 공급망에 대한 리쇼어링과 기술유출 대책을 추진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엔저로 내수는 절약지향 vs 엔바운드 소비 급증

2023년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韓日 교역은 감소하다 2021년 회복세로 전환했지만, 2023년 양국의 경기회복이 부진하며 전년 대비 11.3% 감소한 7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 22.1%, ▲미국 10.5%, ▲호주 8.3%, ▲UAE 4.7%, ▲대만 4.5%가 상위 5개국이다(WORLD TRADE ATLAS). 우리나라는 3.9%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日 주요 수출 품목은 2023년 기준 석유제품이 18.1%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철강판 8.7%, ▲반도체 4.9%, ▲금·은·백금 3.6%, ▲농약·의약품 3.2%, ▲비누·치약·화장품이 2.8%를 차지했다(K-STAT 무역통계).

● 韓日 교역 추이 ●

(단위 : 100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對日수출(A)	28,420	25,098	30,062	30,606	29,001	14,472 (1.6%)
對日수입(B)	47,581	46,023	54,642	54,712	47,656	22,940 (△7.3%)
교역규모(A+B)	76,001	71,121	84,704	85,318	76,657	37,412 (△4.2%)
수지(A-B)	△19,161	△20,925	△24,580	△24,106	△18,655	△8,468 (2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괄호 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감)

10월 31일 일산 KINTEX에서 열린 'FTA 활용 일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발표를 맡은 KOTRA의 김일경 수출바우처 팀장은 현재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 상황과 소비 트렌드를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2010년 이후로 정체 상태라 할 수 있다. 총생산도 GDP도 경제성장률도 비슷하다. 유일하게 변화를 보인 것은 물가상승률이다. 지난 30년간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엔저 현상으로 수입물가상승은 2~3%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역대급'에 해당하는 5~6%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며 대대적인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절약지향적인 분위기가 극심해졌다.

내수 소비에 타격을 준 엔저 현상. 하지만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2% 하락하자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급증한데다 이들의 씀씀이와 체류기간 또한 늘어났다. 올해 3월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최초로 월간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1~5월 해외 관광객 수는 이미 2019년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눈여겨 볼 점은 일본을 찾은 관광객으로 인한 엔바운드 소비(엔저+인바운드 신조어)가 웬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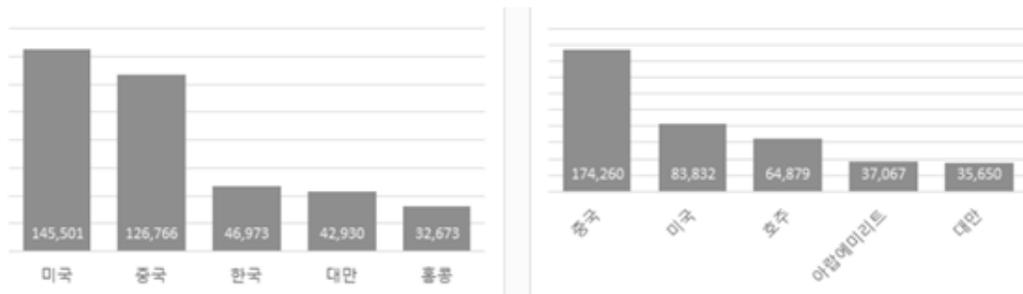
주요 수출품목만큼의 수출액을 올렸다는 것이다. 현지 매체 니혼게이지자신문은 올해 6월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며 관광이 자동차에 이어 제2의 수출 효자 산업이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방일객 지출 연 환산액은 7조 2,000억 엔으로 한화로 약 32조 원이다. 이는 10년 만에 5배 늘어난 수치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24년 1~9월 누계 엔바운드 소비액은 5조 8,000억 엔으로 이미 2023년 연간 실적을 상회했다. 엔바운드 소비는 우리 기업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지출을 하는 대상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KOTRA의 김 팀장은 “엔바운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일본에 와서 소비를 하는 외국인을 겨냥하길 바란다”며, “동남아시아, 유럽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 2023년 일본 5대 수출국 & 5대 수입국 ●

(단위 : 100만 달러)



출처 : 관세청(자료 ITC Trade map 2024년 7월 기준)

그밖에 김 팀장은 제조 설비와 IT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설비 노후화가 심하다보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일본정부가 기업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스마트팩토리나 보안 솔루션과 관련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진출하는 우리 기업도 늘고 있다. 김 팀장은 IT 관련 기업이 KOTRA 도쿄무역관 내 마련된 IT 센터에 입주한다면 현지 기업 바이어를 공략하거나 상담을 하기에도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소비 트렌드와 관련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전자상거래다. 일본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4조 8,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9.23% 증가했다. 2023년 B2B 규모는 465조 2,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특히 일본, 미국, 중국 3국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한 금액은 2조 4,301억 엔에 달한다. 그에 비해 중국 소비자가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 지출한 금액은 440억 엔에 불과하다. 일본 소비자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지출한 금액은 1조 4,798억 엔이며 미국 소비자가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 지출한 금액은 3,768억 엔이다. 일본에서 방문자수 상위 1~5위를 차지하는 플랫폼은 아마존, 라쿠텐, 메루카리, DMN, 테무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도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워낙 일본에 절약지향형 소비가 만연하다보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테무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중국 저가 제품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産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수출기업에 한 가지 당부했다. 제품을 한번 수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품질이나 디자인 등을 보완·개발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라는 것. “KOTRA에서 일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향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의견을 수용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달라는 현지 의견이 많았다”고 조언했다.

RCEP 적용의 첫 단계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병선 관세사가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세진합동관세사무소의 소병선 관세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활용한 일본시장 진출 전략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소 관세사는 “원산지증명서로 RCEP을 적용받으면 일본의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직접적인 금전 혜택은 없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번거로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상대 기업과 가격협상의 열쇠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라”고 말했다.

2022년 발효된 RCEP은 ASEAN 10개 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당사국 중 일본을 제외한 13개 국과 우리는 이미 양자 FTA가 발효돼 있다. 그렇기에 RCEP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지만, 원산지 기준과 규정을 잘 따져보면 기업에 실익이 될 수 있다. 가령 HS 코드 제2203호에 해당하는 맥주를 일본에서 수입할 때, 우리나라의 기본 관세는 30%다. 하지만 2024년 기준 RCEP 적용 관세는 25.5%다. 세율은 2025년 24%, 2027년 21%, 2029년 18%로 조금씩 떨어져 2030년에는 16.5%가 된다. 일본의 RCEP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RCEP을 활용한다면 물품의 품목분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HS 코드에 따라 양허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국 세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일 물품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 간 HS 코드가 다른 경우 수입국 HS 코드를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 코드까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9단위 품목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 6자리가 세계 공통으로 HS 코드 분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HS정보와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본의 품목분류코드와 실행관세율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출입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다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의 이나에 관세관은 FTA 무역리포트(통권 39호)를 통해 “일본은 물품 통관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문화로 인해 수출입기업에 까다로운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관의 자의적인 법 규정 해석은 거의 없어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 관세사 또한 지적한 부분이다. 그는 일본과 거래하는 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기업은 일본 업체로부터 완제품은 물론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재료는 직접 제조하지 않았고 한국산이 아닌 부품도 포함됐다고 설명하자 일본 업체는 모든 부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소 관세사는 “상당히 꼼꼼하게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이유와 해당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이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의 제도를 파악하고 수출요건을 충실히 구비하며, 원재료·생산공정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시 '세관사무관리인' 필요성 대두

아울러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시 세관사무관리인 제도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일본 내 주소나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판매자가 일본 국내 거주자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거나 해외 수입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 부적절한 수입신고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밀수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가령 수입신고 시 이전에는 수출자의 주소 및 이름까지만 요구했지만, 2023년 10월부터는 수입자의 주소 및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세관사무관리인(ACP,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s)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단순히 수입 절차를 위탁받은 수입 대리인은 수입신고자가 될 수 없게 됐다. 세관사무관리인은 일본에 거점이 없는 개인이나 비거주 외국 법인을 대신해 수출입 신고 절차, 관세 및 수입 소비세 납부 절차, 환부금 수령, 각종 검사의 입회 등을 수행한다.

이내에 관세관 또한 올해 8월 열린 '2024년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강조했다. 이 관세관에 따르면, 일본 비거주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면 일본 내 주소 또는 거점이 있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가령 일본 비거주자인 해외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배송·보관·포장·재고관리 등을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를 이용해 일본 내에서 판매할 예정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사무관리인을 정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해외 판매자가 일본으로 통관 절차만 일본 기업에 위탁하고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가 일본으로의 운송·통관 등을 포워드에게 위탁하고 일본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에서 세관사무관리인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에 진출하고자 했던 한국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났다고 한다. KOTRA 윤정아 도쿄무역관은 올해 8월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기업을 위한 일본 세관사무관리인 제도(ACP) 활용법' 보고서를 통해 "세관 문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관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윤 무역관에 따르면, 적정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할 예정임을 증명하려면 일본 수입신고 가격의 산정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KOTRA의 김일경 팀장 또한 "현지에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세관사무관리인으로 지정할 마땅한 파트너가 없다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 위치한 KOTRA 무역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 세관은 2025년 10월 12일부터 수입신고 항목에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에 해당 여부, 해당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명칭, 수입허가 이후 물품 운송처 소재지 및 명칭에 관한 세부 정보도 기재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 김성은 기자 |

역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FTA FTA
질문	노르웨이産 수산물을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서 위탁가공(내장 제거 등)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노르웨이에서 획득된 연어를 인도네시아에서 내장 제거 후 한국으로 수출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내장 제거 공정이 “그 상품의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의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으로 한·EFTA 협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산지 상품 요건

(1) 원산지 상품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각 품목별 원산지 판정을 하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이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부속서 형태로 제시돼 있다.

실무적으로 PSR의 충족은 FTA 원산지 판정 작업의 처음이자 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은 PSR로만 구성돼 있지 않고, 전체 물품에 적용돼야 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를 공통기준이라고 부르는데, 공통기준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 및 충족돼야 하는 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역내생산원칙 및 직접운송원칙으로 구성된다.

(2) 역내생산원칙

역내생산원칙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모든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기준’ 중 하나로 물품의 생산·제조 등의 과정이 ‘역내국 또는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역내생산원칙은 물품의 생산·제조 등의 과정이 제3국(역외국가)에서 수행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결정할 수 없는 원칙으로 비원산지 재료가 투입돼 생산·제조된 완제품의 최종 생산은 반드시 역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의 생산 활동 등이 협정 당사국(역내)에서 이뤄지도록 해 역내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협정에서는 물론 역외가공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개성공단 등에서 가공이 이뤄진 물품에 대한 예외가 규정돼 있다. 다만, 실무상 역외가공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며, 역내생산원칙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협정별 규정은 상이한데 직접적으로 영역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 협정과 그렇지 않은 협정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한·EU FTA 제12조 영역 원칙에서는 제3조(원산지 누적) 및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역내생산원칙에 대한 단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돼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 FT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접운송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직접운송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송 특성상 환적, 하역, 재선적 등의 작업이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FTA 체결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한·칠레, 한·미국, 한·캐나다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은 모두 ‘직접운송’ 조항을 협정문에 규정(유럽형)하고 있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한·칠레, 한·미국, 한·캐나다 FTA는 ‘통과 및 환적’ 규정으로 운송 요건에 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규정(미주형)하

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협정별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인정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결국 쟁점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각 협정별 규정 및 국내 지침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호에서 문제가 되는 경유국 작업 인정 범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역·재선적에 관한 사항은 모든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협정별로 범위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는 하역·재선적·보관·재포장·재라벨링·운송목적 분리·보존 필요공정이 인정되는 등 다른 협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재라벨링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다른 협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과거 관세청에서는 한·EFTA FTA의 대상인 스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당사국인 네덜란드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링 작업 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비당사국에서의 재라벨링 작업은 협정에서 허용 가능한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한·EFTA FTA에서는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만 허용하고 있고 재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유국 작업 인정 범위를 포함한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은 협정별로 유사하지만, 어떤 작업까지 비당사국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규정은 개별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운송 규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RCEP은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활용하면 RCEP에서 정해진 직접운송의 범위보다 더 많은 작업이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CEP에서도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의 탁송물의 분리나 라벨링 작업이 허용된다.

RCEP에서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을 경유할 때의 허용 범위를 하역, 재선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RCEP 협정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서는 작업의 허용 범위를 하역, 재선적 이외에도 탁송물의 분리, 라벨링과 같은 작업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운송	연결원산지증명
작업 인정 범위	(인정 범위)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인정 범위)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즉, 베트남産 물품이 싱가포르를 통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연결원산지증명이 발급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므로 한정된 라벨링이 이뤄지면 중간 경우 당사자에서의 허용되는 작업 범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에서는 노르웨이産 수산물을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서 위탁가공(내장 제거 등)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류의 내장을 제거하는 것은 맛을 유지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중금속(수은 등)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다. 기사에 따르면 모든 노르웨이産 대서양 양식 연어는 위생상 내장을 100% 제거한 뒤 수출되며 검역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안전성 검사를 거친다고 한다.¹⁾

해당 사례는 이미 직접운송이 이뤄져 있다고 보기 힘들고 제3국을 경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운송 관련 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규정은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에 관한 해석이다.

(2)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

각 협정별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직접운송원칙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역외국에서의 상품 보존 필요공정에 관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며 직접운송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1) 연합뉴스 기사, [카드뉴스] 연어회 먹으면 위험하다? 고래회충의 진실, 2020. 4. 2.

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상품(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단 한·EFTA FTA에 대한 직접운송 규정을 확인해보자.

■ 한·EFTA FTA [부속서 1]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14조 직접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 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EFTA의 직접운송원칙은 다른 협정들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파이프라인 운송의 허용이나 탁송품 분리 등의 규정은 눈여겨 볼 만할 것이다. 다만, 이번 질문 & 답변 사례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에 관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나 예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각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라벨링 관련 사례 외에도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 & 답변 사례가 존재하는데, 폐수처리장치 제어반(미국 생산)을 독일로 수출해 독일에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최종 공정은 계약상대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비당사국에서 제어반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안내했다.

(3) 질문 & 해석에 대한 답변

결국 역내생산원칙과 직접운송원칙이 연계된 상황에서는 역내생산원칙에도 불구하고 직접운송의 규정을 적용해 일부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3국에서 수행된 작업이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에 해당되는지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에서 획득된 연어에 대한 내장 제거 공정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이번 사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그 상품의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의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내장 제거라는 것이 하역이나 재선적 등과 무관함은 물론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EFTA FTA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이유는 결국 해당 규정에 대한 예시 등의 추가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도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직접운송 규정에서 정하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는 환적(TRANSSHIPMENT)에 대해 규정하면서, 원산지 물품이 USMCA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운송될 경우 물품이 USMCA 국가의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이나 기타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 역외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으로 하역, 재적재, 대량 화물의 분리, 보관, USMCA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라벨링 또는 기타 표시(unloading; reloading; separation from a bulk shipment; storing; labeling or other marking required by the importing USMCA country) 외에 물품을 수입국으로 운송하거나 물품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USMCA country or to 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의 예시는 (i) 검사(inspection), (ii) 운송 중 발생한 먼지 제거(removal of dust that accumulates during shipment), (iii) 환기(ventilation), (iv) 펼침 또는 건조(spreading out or drying), (v) 냉각(chilling), (vi) 소금, 이산화황 또는 기타 수용액 교체(replacing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vii) 손상된 포장재 및 컨테이너 교체(replacing damaged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그리고 부패하거나 손상되어 나머지 물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 단위 제거(removal of units of the good that are spoiled or damaged and present a danger to the remaining units of the good.)다.

각 협정별 해석이 필요하지만 USMCA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내장 제거는 역외국에서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한·EFTA FTA에 비해 USMCA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협정을 활용함에 있어 보다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협상 또는 개정 작업 시에는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에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과 관련된 예시를 규정상 포함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은 방법은 해당 물품이 인도네시아産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FTA인 한·ASEAN, RCEP, 인도네시아 협정의 경우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S CODE 및 품명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한·ASEAN FTA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0302.14-0000호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인도네시아 CEPA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0302.14호에 분류되는 대서양 연어의 경우 한·ASEAN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는 완전 생산기준을, RCEP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제03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완전생산기준과 완전히 다른 규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냉장, 냉동 등의 처리만 이뤄진 어류는 모두 제03류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단순히 내장 제거 등의 사유로 2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는 노르웨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한·EFTA FTA도 인도네시아産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한·ASEAN FTA 등의 협정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에 대해 우리나라 발효 협정이나 지침상 정확한 예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것은 제3국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을 일체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다만, 비당사국에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FTA 적용 전에 관세청 등 국가기관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요건 / 생와사비 뿌리의 수입요건

제0706.90-2000호에 분류되는 고추냉이와 겨자무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관세율표에서 제0706호에는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06.90호에는 ‘기타’가, 제0706.90-2000호에는 ‘고추냉이와 겨자무’가 세분류됩니다.

제0706.90-2000호에 분류되는 ‘고추냉이와 겨자무’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는 생와사비 뿌리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품목분류 / 열분해 탄화장치의 HS Code

폐기물을 탄화처리하는 열분해 탄화장치는 어느 세번에 분류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의 ‘기타’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8417.80-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8417호 해설서에서 “호에는 비(非)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 furnace)와 오븐(oven)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爐)실에서나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爐) 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레토르트(retort)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예 : 배소(焙燒)·용해·소성(燒成)이나 분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증기 가열식의 오븐도 포함한다. 어떤 형식의 것(예 : 터널 오븐)에 있어서는 열처리 대상물이 오븐 속(예 : 컨베이어밴드 위에 놓여진 상태로)을 연속적으로 통과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13) 쓰레기 등의 소각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소각로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환급 / 수입신고 절차 완료 후 감면 적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을 해도 사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관세감면 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됐으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리 후에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가 수리돼 반출이 완료됐다면, 사후 관세감면 적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다면 「관세법」의 과오납 환급이 가능하나,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면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해 통관 관련 세관 수입부서에 감면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연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 연장 신청을 해도 기존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연장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해도 인증번호가 동일하고 차수가 새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연장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신규로 적용돼 인증번호가 새로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 및 인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세청 담당 부서(FTA 집행과 042-481-3221)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세관 담당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청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직원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원산지 / 원산지 표시의 면제

**수입한 물품에 결함이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부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부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돼 있어야 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 표시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수입·판매된 물품 자체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하자 발생에 대비해 미리 수입하는 경우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마모 등으로 발생한 하자를 고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은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수입 물품이 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사례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제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 <후략> ...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도8824(2022. 12. 15) 대상판결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관세범을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세무공무원과 달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7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라고 한다)을 가진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혐의자에 대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 혐의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내용을 부인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규정에 따라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¹⁾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자가 진술내용을 부인한 경우 그 증거능력은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 12. 15. 2022도8824(대상판결)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혐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조세범칙혐의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비록 공판기일에 진술자가 진술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 취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특사경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진술자가 신문조서 진술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세관공무원은 특사경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술자가 신문조서 진술내용을 부인한 경우 신문조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세포탈사건을 조사하는 양 기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포탈을 조사하는 법적 근거와 조사과정 및 형사처벌 방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단지 외형상 특사경 권한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세범에 대한 벌칙조항은 세무사건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돼 있고 관세사건의 경우 「관세법」 제11장(벌칙)에 규정돼 있다. 조사절차에 대해서는 세무사건의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

1)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해 당사자, 증인,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하며, ‘신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도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한다(국립국어원).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를 ‘심문’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아닌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법」에, 관세사건의 경우 「관세법」 제12장(조사와 처분)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조세범칙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역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검사장의 지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 또는 압수수색 영장청구 행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른 종국적 처분 역시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등 3가지로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활동은 특사경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같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관공무원에게만 특사경을 부여한 이유는 마약이나 총기밀수 등 입·출국 현장에서 즉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할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행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관세청의 관세범칙조사는 목적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유독 세관공무원에게만 특사경을 부여할 차별적인 실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달리 취급하면 양 기관의 형평성 문제 이외에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상관결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세심사행정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사실관계

검사는 수산물 유통업자인 피고인 1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개한 피고인 2, 3을 ① 무자료 수산물거래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② 허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죄 증거로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2에게 대해 작성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를 제출했다.

III. 법원 판결요지

가. 원심 판결

원심(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은 ‘피고인들에 각 범칙혐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에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업무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② 舊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舊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법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했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③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자·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IV. 대상판결 평석

1. 증거능력과 증거력의 구분

소송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재판과정은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사실 확정과 관련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증거’라고 한다. 증거는 증거 방법, 증거 자료, 증거 원인 등 3가지에 따라 정의한다. ① 증거 방법 : 법원이 사실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로 인적 증거(증인과 감정인 및 당사자 등)와 물적 증거(문서와 검증 등)로 나뉜다. ② 증거 자료 : 증거 방법을 조사해 얻은 내용으로 문서의 기재 내용, 증언, 검증 결과, 감정 결과 등이 있다. ③ 증거 원인 : 법원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증거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이 있다.

증거능력은 증거 방법으로서 증거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²⁾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증거력은 특정한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 즉,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칙과 경험칙³⁾에 따라 판단한다.⁴⁾ 정리하면, 증거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 유무, 즉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고 증거력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나 승소에 기여할지의 문제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딸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아버지의 진술과 관련해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아버지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법관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고려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⁵⁾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2) 임의성 없는 자백,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 해당 사건의 공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인간의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많은 사실을 경험한 결과 얻게 되는 일반적인 결론을 의미한다.
4)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5)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기타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313조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12조에서 언급한 ‘피의자신문’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듣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 작성한 조서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를 획득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해 수사기관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행하고 그 진술이 법원에 의해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 없이 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수사기관이 적법절차 의무를 준수하고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신뢰성 보장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진술내용이 자백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 자백 이외의 진술인 때에는 제317조에 의해 임의성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 대법원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성이 추정된다”고 판시했다.⁶⁾ 둘째 피의자 신문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즉 신문절차에 위법이 없어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행한 신문, 변호인선임권이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서 행한 신문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022년 이전의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동일한 피의자를 두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 주체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이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전제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 성립과 특신상태⁷⁾를 기준으로 했지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더 나아가 진술자의 내용인정까지 이뤄져야 증거능력이 부여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이와 같이

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등

7) ‘특신상태’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형사소송법」 개념으로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위키백과>

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실질적 진정성립’과 ‘내용 인정’은 구별돼야 하므로, 만일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기는 했지만 피의자가 진술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에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인정돼도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¹⁰⁾ 2022. 2. 4.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6924호)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부여하도록 개정됐고 그 결과, 검사가 작성하든 수사기관이 작성하든 인정 요건이 동일하게 됐다.

3.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 판단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진정성립¹¹⁾과 특신상태의 요건이 충족된 진술서는 피의자가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에 진술서는 모두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법원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능력 유무는 제313조 제1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¹²⁾함에 따라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제312조 제5항 신설)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만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대상판결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사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 다음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지

9)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등

10)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727면

11) 성립 진정은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진술서면의 자필 또는 서명·날인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고 후자는 진술서면의 기재 내용과 진술자의 진술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않았고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대상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가 수사절차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보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상판결은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이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라는 전제에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의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임을 밝힌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행정절차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여부 등도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요구했다.

4.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다. 세무, 위생, 근로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직무법」에 정하고 있다. 사법경찰은 범죄자를 추적, 체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행정경찰은 공공질서 혼란의 억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경찰은 그 성질이 사법작용, 사후적 제재적 작용인 반면에 행정경찰은 그 성질이 행정작용이고 사전적·예방적 작용이다.¹³⁾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적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지만 일정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는 경우(근로감독관 등)가 있고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권한 범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지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같다.¹⁴⁾ 2020. 2. 4.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사

1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1225면

14) 이재상 외 2인,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200면

법경찰관리와 검사는 지휘·감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모됐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여전히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종결권이 없다.¹⁵⁾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지명을 받고 조세범칙조사를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대상판결 취지와 같이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부정설과 비록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범칙조사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봐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¹⁶⁾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부정설

1) 「사법경찰직무법」은 세관공무원과 달리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지 않았다.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특별한 법률에 따른 권한만 행사한다. 세무공무원에게는 대물적 강제처분권한만 부여돼 있고 사법경찰관리와 달리 대인적 강제처분권한이 없다.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형사절차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 지위를 가질 뿐이고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돼야 함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고(법률유보의 원칙), 조세범칙조사의 많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절차의 기본 골격과 괴리되므로 세무공무원을 제3의 수사기관으로 인정하는 것도 무리다. 또한 세무공무원과 세관공무원의 지명절차가 유사하다고 엄격해석을 요하는 형사절차에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하는 사전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세무서장이 고발한 경우에 조세범칙사건조사 및 처분절차가 종료되며 형사사전절차로 이행된다고 판결했다.¹⁷⁾ 이 판시는 조세범칙조사절차가 수사 → 기소 →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의 구별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로서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는 판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15)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16) 조현락(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참조

17)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4)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¹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혐의자를 심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¹⁹⁾ 「관세법」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²⁰⁾ 이처럼 입법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에 관한 규율 영역에서 세무공무원과 세관공무원을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의 업무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하다고 해 문언해석 한계를 넘어 세무공무원을 세관공무원처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해석할 수 없다. 관세법 조사의 경우 마약밀수 등 입·출국 현장에서 즉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할 업무적 특성도 있다.

5) 세무공무원과 세관공무원의 지명절차가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행정청이 수사성격을 일부 띤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장의 지명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유사한 권위를 심어주고 검찰의 통제를 받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검사장이 지명한다고 해 역으로 검사장이 지명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볼 근거는 없다.

나. 특별사법경찰관리 긍정설

1) 「형사소송법」 제245조10 제1항에서 규정한 ‘세무’에 관한 사항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포함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정한 법률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법경찰 직무법」 제5조 제17호가 관세법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주의적·확인적 규정일 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규정이 아니다.

2)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고 있으므로 그 지명절차가 동일한 세무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의 [별지 제5호 서식]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직무범위에 관한 예시문언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수사’를 기재하고 있다.

3) 조세범칙조사는 통고처분이나 기소 또는 무혐의 확정을 위한 전 단계 활동인데 통고처분은 형사처벌에 갈음한 것이므로 그 확증을 얻기 위한 전단계 활동인 조세범칙조사도 범죄수사로

18) 「관세법」 제295조

19)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20) 「관세법」 제290조, 제291조

봐야 한다. 그리고 관세사건도 세무사건과 동일하게 통고처분, 기소, 무혐의 중 어느 하나로 종결된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주요 권한인 압수·수색권한 등을 부여했다. 세무공무원에게 대인적 강제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조세범이 행정법이어서 물적 증거 등이 대부분이고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의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에게 대인적 강제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고 본다면, 조세범칙조사에는 형사 영역이 아닌 행정 영역의 법원리가 적용되므로 피의자에게 부여된 엄격한 권리보장 장치와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상 적법절차 원칙의 통제를 벗어난다. 심문조서를 제3자가 작성한 진술 기재 서류로 볼 경우 무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돼 자백편중의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강압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무력화된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권을 행사해 작성한 서류임에도 오히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보다 증거능력 인정에 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부작용이 있다.

다. 검토 의견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특사경을 가지고 동일한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과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통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로 이원화돼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일반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로 이원화돼 있고 관세청 역시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관세심사와 탈세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칙조사로 이원화돼 있다.²¹⁾ 관세범칙조사의 착수 배경으로 내부 정보 제공과 외부 정보 제공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관세심사 담당직원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심사 도중 납세자의 탈세고의성이 발견돼 조사국에 조사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밀수신고 또는 외부기관의 정보 제공 등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법 규정 미숙지 또는 판단오류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액 탈루가 있었는지를 심사하며 만일 조세탈루가 있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의 탈세 고의성 유무를 조사하며 만일 탈세 고의성이 발견되면 납세자에게 벌금 부과 또는 징역을 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 관세심사는 관세청 심사국이 담당하며, 관세범칙조사는 관세청 조사국이 담당하고 있다.

일선 세관 심사국에서 수행하는 기업심사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및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함을 전제로 진행된다. 그러나 만일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판단되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적용이나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 즉시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중단을 통보하고 특사경이 있는 조사국에 범칙조사 의뢰를 하게 된다. 일선세관 조사국은 수사기관으로서 해당 납세자에게 탈세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범칙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범칙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피의자·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관세법에 관해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²²⁾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조세범칙조사 역시 관세청에서 수행하는 범칙조사와 유사하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사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²³⁾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도중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한다.²⁴⁾ 조세범칙 혐의자를 심문한 후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2장(조사와 처분)의 규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은 조항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①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지명이 있어야 하고, ② 범칙혐의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③ 범칙혐의자에게 출석 요구해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④ 조사한 결과, 고발이나 통고처분 또는 무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종결한다는 점이다. 다만, 「관세법」에는 조세범칙사건과 다소 무관한 마약이나 총기밀수범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현행범 체포 규정이 추가적으로 열거돼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는 자를 지칭하고 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해당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했으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한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휘감독관계로부터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모했다.²⁵⁾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여전히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 한편,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고,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해 개시된다. 한편 내사는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적인 조사 활동이다. 내사와 수사의

22) 「관세법」 제319조

2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24) 압수수색 영장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25) 「형사소송법」 제195조

구별기준에 관해 형식설(입건 기준), 실질설(범죄인지 기준)이 대립하나 내사단계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수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비로소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범칙에 사용된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조사 결과 무혐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통고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해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혐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는 제도다. 하지만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범죄행위이므로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소추절차로 이행하게 된다.²⁶⁾

이러한 점 외에도 심문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내지 조서의 작성 방식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²⁷⁾ 세무공무원은 대물적 강제처분권한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사법경찰관리의 강제수사방법이다.²⁸⁾ 수사기관을 실질적,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세무공무원도 수사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지 특별사법경찰관리라는 형식적인 권한 분장이나 지위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범칙혐의자의 인식도 그러하므로 특사경을 가진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조세범칙조사절차 성격에 대한 견해

가. 행정절차로 보는 견해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수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 법제의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절차의 법적 성격은 그 절차가 규정된 법률인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근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문언상 행정청의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조사절차로 볼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무혐의,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종국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과세목적의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성질은 행정절차로 해석해야 한다. 단지 범칙혐의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에

26)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이지만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등 사법절차로 이전되기 때문에 통고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27) 「조사사무처리규정」

28) 비록 세무공무원에게 대인적 강제처분 권한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는 조세범이 행정범이어서 물적 증거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²⁹⁾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을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세무서장의 고발로 조세범칙조사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절차로 이행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³⁰⁾ 조세범칙조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세무공무원에게 대물적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별규정은 입법자가 적법절차의 원칙 내지 조세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정한 것이다. 조세범칙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느 범위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에 사법권한의 일부를 부여한 것을 위헌으로 보지 않은 한,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조세범칙조사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조세범칙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이고 통상의 수사절차에서 보면 하나의 준비절차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조세범칙조사를 수사절차로 볼 수 없다. 이외에도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법적 성격은 근거법률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해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해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세무서장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조세범칙처분을 한다. 결국 심문조서는 1차적으로 행정청인 세무서장 등의 조세범칙처분권 행사를 위한 내부보고 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 형사절차로 보는 견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행위 및 그 행자를 확정하고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며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한과 거의 유사하므로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조사가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범죄수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및 처분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① 조세범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이어서 조세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증거 수집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고, ② 정상이 경미한 재정상 손실 등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납부에 의해 조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며, ③ 세무서장 등의 행정처분으로 범칙사건이 종결될 때 국가는 일응 형벌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납세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³¹⁾ 이는 범칙혐의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대인적 조사방법이다. 통상 세무서에서 심문하고 사업장 등에서도 가능하

29) 강구진,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법학> 24권, 1983., 235면

30) 헌법재판소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31) 서희열·김형상, '현행 조세범칙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0권 제2호, 2003., 64면

며, 심문 장소로 출석요구는 임의적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심문조서는 조세법칙처분권자의 행정청에 대한 내부 보고문서가 되는 것과 동시에 수사와 재판 시의 증거자료가 된다.

한편, 범칙조사 절차로서 ①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다. ② 세무서장은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지휘·감독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후 고발 또는 통고처분 등을 하는 범칙처분권자다. 조세범칙사건의 착수, 일반세무조사의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대부분 조사진행을 세무서장이 지휘한다. ③ 검사는 조세범칙조사 중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절차에 관여하고 그 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나,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과세절차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일반세무조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조세범칙조사로 이원화돼 있다. 일반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활동으로서 단순한 행정절차다. 형사처벌은 통상 수사·소추·재판의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조세범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통상적인 형사절차보다 앞서 진행되며 통고처분이 확정될 경우 범칙조사절차는 실질적으로 형사절차를 대체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까지 받는 부담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수사와 재판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조세당국과 사법당국으로 이분돼 있지만 양자 사이의 권한 배분과 절차적 통제에 관한 규율이 없어 빚어진 것이다.³²⁾

다. 검토 의견

조세범칙조사가 행정절차인지 아니면 형사절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사건에서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추구하는 이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세납부에 관한 행정절차는 조세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순으로 이뤄진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기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³³⁾,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납부, 무효, 취소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납세자가 조세탈루가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를 하게 된다. 관세청의 경우 법인심사(정기심사)³⁴⁾, 기획심사(수시심사)³⁵⁾,

32) 이상돈, <조세형법론>, 세창출판사, 2009., 126면

33) 납세의무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4)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심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5) 신고 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AEO공인업체 대상 종합심사를 한다. 기업심사절차로서 ① 기업심사 사전통지, ② 기업심사 개시, ③ 기업심사 진행, ④ 기업심사 종료, ⑤ 기업심사 결과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① 기업심사 사전통지는 관할세관에서 기업심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기업심사 개시 15일 전까지 기업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② 기업심사 개시 및 ③ 기업심사 진행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 납세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심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20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업심사 종료 및 ⑤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기업심사가 종료되면 종료일에 기업관계자의 참석하에 심사팀장이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심사 결과를 정리해 심사처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심의 후 납부할 세금 등이 기재된 ‘기업심사결과통지서’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올바르게 신고해 세액을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관세당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아니면 납세자의 과실로 인해 조세탈루가 있는지를 사후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즉 행정절차는 국가재정을 위해 정당한 세액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세 등 본세와 함께 납세자의 과실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형사절차는 납세자가 고의로 탈세한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서도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죄의 성립요건은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성 등 3가지다. 일정한 행위가 3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범죄로 성립하고 그 후속 효과로서 형벌이 가해진다. 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해 범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성립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판결을 하게 된다. 형사절차는 특정한 행위가 이러한 조세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는 절차이며,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과하게 된다.

통고처분이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를 행정절차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통고처분제도는 법원에 의해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혐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는 제도다. 하지만 통고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도 범죄행위이므로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소추절차로 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관세법」 제283조에서도 ‘관세법’이란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통고처분과 형사처벌은 대등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고처분 금액은 범칙금의 일종으로 조세 등의 본세나 가산세의 일종이 아니며 또한 통고처분은 반드시 형사처벌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도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³⁶⁾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했을 때는 심문조서에 그 경위를 기록해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업무는 그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범칙혐의 자심문조서 등의 자료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의 착수단계로서 형사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행정절차는 과세가격이나 세율이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국가재정 확보에 그 목적이 있고 형사절차는 정당한 세액을 침해하려는 납세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3가지의 조세범칙 성립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범칙혐의자를 처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 조사가 명백히 조세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이상, 형사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관세심사 영역에서 대상판결 취지를 검토할 필요성

세관 심사부서에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신고한 과세가격과 세율이 정당함을 제출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기업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과세자료 회피, 은닉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도 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본세를 추징당하는 것보다 자료기피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훨씬 적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이유도 한 몫 한다. 세관 심사부서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업의 소명서나 확인서를 통해 징구하게 되는데 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관의 관세심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쟁송과정에서는 진술을 반복하는 기업도 더러 있다.

이에 심사부서는 대상판결 취지를 적극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사대상업체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기피할 경우 기업의 확인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관 심사부서가 주도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가진 문답식의 조서를 작성해 이를 통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조서는 특사경이 없는 심사직원이 조세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파급 효과로 일부 기업의 진술 반복 관행에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36)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거쳐 혐의자를 고발하거나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해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7조).

37) 본청에서 일정한 문답서 서식을 만들어 전국 세관에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적법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V. 맺는 말

진술자가 공판기일에 과세관청이 작성한 조서에 기록된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동일한 조세범칙사건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이 가진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특사경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대상판결은 문제가 있다. 즉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해 행하는 조세범칙사건은 제재근거와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 처분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양태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세관공무원이 작성하든 세무공무원이 작성하든 동일한 잣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니면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할 차별적이고 설득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뚜렷이 찾을 수 없다.

관세범 조사의 경우 마약밀수 등 입·출국 현장에서 즉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할 업무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한을 세관공무원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특정한 업무를 제외한 조세탈세사건의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누가 작성했는지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즉 대상판결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관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역으로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³⁸⁾

그러나 특사경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면, 비록 세무공무원이 특사경이 없더라도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목적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추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본세를 탈세하려고 의도한 납세자를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관할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조세범칙조사활동은 형사절차의 일종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형사절차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입법형식으로 특사경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사경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조세행정이 실질과세원칙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나아가 공판중심주의 구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38)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과세관청이 작성한 조서에 기록된 진술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바닥깔개의 품목분류

은 정 화 | 부산세관 통관검사4과

I. 머리말

선선한 바람과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가을이 늦게 시작된 만큼 길게 이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니 시원하던 거실바닥도 이제는 한기가 피부에 맞닿아 차갑다. 이럴 때 거실바닥에 깔고 잘 사용하는 것이 러그나 카페트다. 관세율표에서는 주로 ‘바닥깔개’라는 용어로 언급되는데 바닥깔개는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러그나 카페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 자동차 바닥매트, 고무제 욕실용 미끄럼 방지 매트 등 다양한 재질과 용도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바닥깔개의 재질별 품목분류와 다양한 재질로 혼합돼 있는 경우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 마지막으로 바닥깔개와 관련한 품목분류위원회 사례를 통해 최신 품목분류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II. 본론

1. 바닥깔개의 품목분류

바닥깔개는 재질에 따라 다양한 세번으로 분류된다. 재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가능한 대표적인 호는 다음과 같다.

● 바닥깔개 구성 재료에 따른 품목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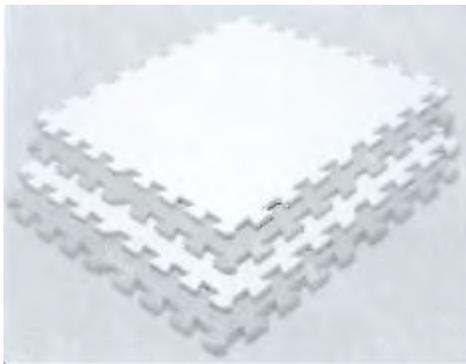
구성 재료	품목분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비닐장판)	제3918호
고무로 만든 바닥깔개	제4016호
가죽으로 만든 바닥깔개	제4205호
모피로 만든 바닥깔개(천연의 것)	제4303호
모피로 만든 바닥깔개(인조모피의 것)	제4304호
조물 재료로 만든 바닥깔개	제4601호
종이 또는 판지를 기재로 만든 바닥깔개	제4811호 또는 제4823호
양탄자류와 이와 유사한 바닥깔개	제57류
리놀륨(방직용 섬유 한쪽 면에 수지, 고무도포)	제5904호

우선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가 분류되며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만 분류된다. 그리고 접착성의 바닥 깔개도 이 호에 포함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1)은 제 3918호에 분류되는 보편적인 플라스틱제 바닥 깔개고, 사례 (2)의 경우 플라스틱 외에도 유리 섬유가 보강재로 삽입되고 다른 면에 부직포와 결합돼 있어 여러 가지 재질로 구성된 바닥 깔개다. 이 물품은 구성 요소의 중량 및 사용 시 노출 표면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 층에 있기 때문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제3918호에 분류된 사례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분류사례 (1) ●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70
시행일자	2020년 7월 17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3918.90-0000호
품명	Floor coverings of plastic; 빅퍼즐매트4p; CB-220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정사각형 4면을 퍼즐처럼 가공한 플라스틱제(PE)의 바닥 깔개 - 용도 : 바닥 소음 방지 - 구성 및 규격 : 바닥 깔개 56 × 56 × 1.2(cm) × 4P, 코너 마감재 8P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p> <p>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 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p> <p>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PE)로 만든 바닥 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8.90-0000호에 분류함.</p>

관련 이미지



● 품목분류사전심사 분류사례 (2) ●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98
시행일자	2017년 2월 10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3918.10-1000호
품명	Floor coverings of polyvinyl chloride; 센스톤 멀티로얄; FRW5002B220A; R.KOREA
물품 설명	- 유리섬유가 보강재로 삽입된 회색계 염화비닐 중합체 시트 일면에 합성섬유제 백색계 부직포를 보강한 롤 모양의 것(두께 : 약 2mm, 제시 규격 : 1830mm × 17m) - 용도 : 버스용 바닥 깔개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 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 깔개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p> <p>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및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a)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sheet) 등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p> <p>본 물품은 염화비닐 중합체 내부에 유리섬유가 보강된 시트 일면에 방직용 섬유제 백색계 부직포를 보강한 시트로서 버스용 바닥 깔개로 사용되는 롤이나 타일 모양의 것임. 또한, 구성 요소의 중량 및 사용 시 노출 표면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 층에 있으므로 제39류에 해당됨.</p> <p>따라서, 본 물품은 버스용 바닥 깔개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롤 모양의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염화비닐 중합체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p>

관련 이미지



다음으로 제11부에서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바닥깔개를 제5701호부터 제5705호까지 제 57류에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다음 표 참조). 그리고 제57류 주 규정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로 정의하고 있다.

● 제57류의 분류체계 ●

제5701호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5702호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제5703호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5704호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5705호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57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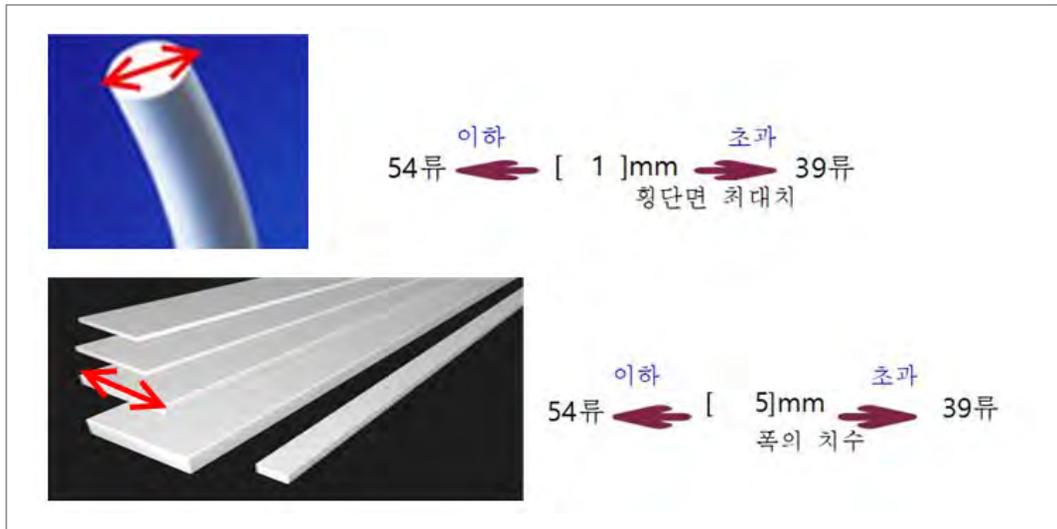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바닥깔개의 밑받침은 제외한다.

제11부에는 제39류와 구분되는 제외 규정이 있는데 다음 표와 같다. 모노필라멘트에서 필라멘트란 가늘고 길게 연속된 매우 긴 섬유를 말하며, 모노(mono-)는 그리스어계의 접두사로 ‘하나’를 의미한다. 즉 다음의 ‘모노필라멘트 그림’과 같이 하나의 가늘고 길게 연속된 긴 섬유를 말하는데 이 필라멘트의 횡단면이 1mm를 초과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된다. 스트립은 다음 그림과 같이 좁고 가는 띠를 의미하는데 이 폭이 5mm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제39류에 분류된다.

● 제11부 주 제1호 사목 제외 규정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직물·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

● 모노필라멘트(위) & 스트립(아래) ●



품목분류사전심사 분류사례 (3)은 제11부 주1호 사목 제외 규정과 관련해 분류된 사례다. 사전심사 물품은 모노필라멘트를 불규칙하게 배열, 접착해 만든 부직포 일면에 PVC 시트를 적층한 바닥깔개로, 노출 표면이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다. 단, 여기서 부직포를 구성하는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이 1mm 이하이므로 제39류에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됐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분류사례 (3) ●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645	검토서 번호	0072019003967
시행일자	2019년 10월 1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5705.00-0000호		
경합 세번	제3918.10-1000호		
	제5705.00-0000호		
	제5904.90-0000호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PVC COILMAT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색계 폴리염화비닐(PVC) 모노필라멘트(횡단면 1mm 이하)를 불규칙하게 배열, 접착하여 만든 부직포 일면에 흑색계 미끄럼 방지용 PVC 시트를 적층한 바닥깔개(규격 : 20mm × 1200mm × 9m) - 용도 : 자동차 매트 제조용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에 사용된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치수가 1mm 이하이므로 제39류에 분류되지 않고 제11부에 분류됨.

관세율표 제11부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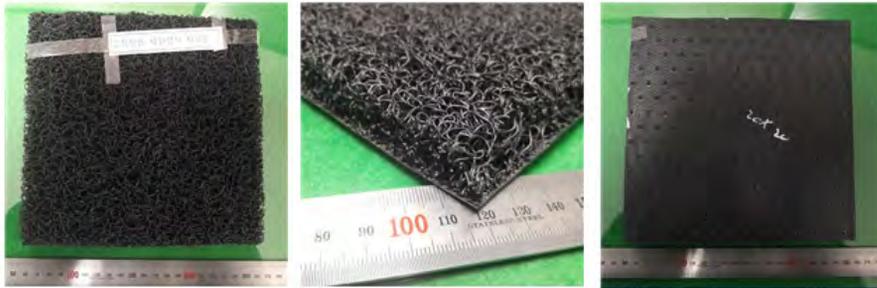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s)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관련 이미지



2. 바닥깔개의 최근 품목분류 동향(품목분류위원회 사례)

1) 자동차용 바닥깔개

○ 물품 ① 설명 : 노출 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가죽(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방직용섬유로 보강), 중간은 입체감을 주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편물이 적층된 특정 형상의 자동차용 바닥깔개 보조매트

○ 물품 ② 설명 : 노출 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가죽(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방직용섬유로 보강), 중간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바닥면은 부직포 시트가 적층된 특정형상의 자동차용 바닥깔개 보조매트

○ 용도 : 인테리어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바닥 보조매트

● 자동차용 바닥깔개 물품 이미지 ●



■ 쟁점세번

품목번호	품명	세율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C 6.5%
90	기타	
9000	기타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기본 8%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29 0000	기타	

○ 쟁점사항 및 품목분류 검토

쟁점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바닥용 보조매트로, 우선 재질을 검토해보면 노출 표면과 중간층 모두 셀룰러 플라스틱이고 바닥면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직포 또는 편물을 적층했다. 여기서 방직용 섬유는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노출 표면이

플라스틱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노출 표면인 플라스틱에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바닥깔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노출 표면이 플라스틱인 바닥깔개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할지, 자동차 차체인 바닥에 전용되는 입체 형상의 매트이므로 ‘차량용 부속품’으로 봐 제8708.29-0000호에 분류할지가 쟁점인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 가황 고무로 만든 바닥용 매트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차량의 바닥 인테리어와 오염방지를 위해 고객이 추가로 구입해 사용하는 보조매트로 제87류 차량의 기능과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했다.

■ 제8708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놓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진흙받이 ; 대시보드(dashboard)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 ; 조종 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 챙(visor) ; 비전기식가열기와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 appliance)(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 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 조립품[새시(chassis)와 차체를 일체구조로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안정한(incomplete)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 예 : 도어·진흙받이·보닛(bonnet)(후드)·뒷부분 커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8707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물품 ①) ●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45
시행일자	2024년 7월 12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3926.90-9000호
경합 세번	제3926.90-9000호 제8708.29-0000호
연도	2024
회	제3회
품명	CAR TRUNK MAT ; MQ4 2110186212642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 노출 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가죽(표면 마름모 패턴으로 박음질 처리), 중간층은 방음과 흡음을 위한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2겹), 바닥면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얇은 편물이 적층된 특정 형상의 차량의 트렁크 보조매트(110 x 47 x 1.2cm) ○ 용도 : 인테리어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트렁크 바닥 보조매트
결정 사유	<p>본건 물품은 차량의 인테리어와 오염방지를 위해 고객이 별도로 구입해 트렁크 바닥에 추가로 깔고 사용하는 보조매트로 제87류 차량의 기능과 구성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고,</p> <p>바닥깔개는 재질에 따라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은 제57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6.91호 등으로 분류하므로 바닥 깔개의 특성(두꺼움, 단단함, 강도)을 갖춘 본건 물품도 재질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p> <p>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p> <p>본건 물품은 노출 표면이 셀룰러 플라스틱이고 중간층은 2겹의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후 바닥면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매우 얇은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편물은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노출 표면이 플라스틱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해야 함.</p> <p>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p> <p>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형상으로 만든 바닥깔개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p>
연관 키워드	자동차, 매트, 부속품

●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물품 ②) ●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38	검토서 번호	0072024002039
시행일자	2024년 7월 12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3926.90-9000호		
경합 세번	제3926.90-9000호 제8708.29-0000호		
연도	2024		
회	제3회		
품명	CAR MAT B(PE FLAT TYPE HOOK ATTACHED CARMAT) PE-F-HK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 노출 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가죽(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방직용섬유로 보강), 중간은 입체감을 주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편물이 적층된 특정형상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보조매트 ○ 용도 :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바닥 보조매트 		
결정 사유	<p>본건 물품은 차량의 바닥 인테리어와 오염방지를 위해 고객이 별도로 구입해 바닥에 추가로 놓고 사용하는 보조매트로 제87류 차량의 기능과 구성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고,</p> <p>바닥 깔개는 재질에 따라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은 제57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6.91호 등으로 분류하므로, 바닥 깔개의 특성(두꺼움, 단단함, 강도)을 갖춘 본건 물품도 재질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p> <p>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p> <p>본건 물품은 노출 표면과 중간층 모두 셀룰러 플라스틱이고 바닥면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직포 또는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방직용 섬유는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노출 표면은 플라스틱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해야 함.</p> <p>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p> <p>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형상으로 만든 바닥 깔개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p>		
연관 키워드	자동차, 매트, 부속품		

2) 발매트, 소파매트

○ 물품 ③ 설명 : 먼 직물(노출 표면)/충전재(합성섬유 워딩)/합성섬유제 직물 순으로 적층하여 누빔처리한 후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도트(dot) 처리된 것(규격 : 67 × 47 × 0.6cm)

○ 물품 ④ 설명 : 합성섬유 직물(노출 표면)/충전재(합성섬유 워딩)/합성섬유제 직물 순으로 적층하여 누빔처리한 후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도트(dot) 처리된 것(규격 : 180 × 70 × 0.5cm)

○ 용도 : ③ 발매트, ④ 소파매트

■ 쟁점세번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A 10% FCN 0%
92 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5 00 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A 10% FCN 10%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2 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A 13% FCN 0%
9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A 8% FCN 2.6%
90 0000	기타	

○ 쟁점사항 및 품목분류 검토

쟁점물품은 직사각형의 발매트, 소파매트, 카페트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직조해 만든 바닥 깔개로 봐 제5702.9호에 분류할지, 그 밖의 바닥깔개로 봐 제5705.00-0000호에 분류할지, 그 밖의 실내용품으로 봐 제6304.9호에 분류할지,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봐 제9404.90-0000호에 분류할지가 쟁점인 물품이다.

물품은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 규정에는 충족한다. 그러나 제57류 총설에서 바닥깔개의 특성을 두꺼움·단단함·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지 검토해보면 원단 특성상 가볍고 단단하지 않아 쉽게 접히는 등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두껍고 단단한 양탄자류와는 구별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바닥면이 미끄럼방지 처리돼 주로 바닥 및 소파 위에 까는 물품이며, 침대를 덮도록 의도된 물품이 아니므로 사용 목적상 제9404호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분류할 수 없다. 즉 발매트, 소파매트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304.93-0000호에 분류됐다.

■ 제57류 총설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 <중략> ...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물품 ③) ●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98
시행일자	2024년 9월 24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6304.92-0000호
경합세번	제5702.99-0000호
	제5705.00-0000호
	제6304.92-0000호
	제9404.90-0000호
연도	2024
회	제4회
품명	FOOT PAD
물품 설명	직물(노출 표면)/충전재(합성섬유 워딩)/합성섬유제 직물 순으로 적층하여 누빔처리하고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도트(dot) 처리된 것.

본건 물품은 원단의 특성상 가볍고 단단하지 않아 쉽게 접히는 등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두껍고 단단한 양탄자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도상 “물기 제거, 오염방지, 보온 등” 그 밖의 가정용 실내용품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57류의 바닥깔개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본건 물품은 바닥면이 미끄럼방지 처리되어 주로 바닥 및 소파 위에 까는 물품이며, 침대를 덮도록 의도된 물품이 아니므로 사용 목적상 제9404호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 <후략>’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 소호 제6304.9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결정 사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 <중략> …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 … <중략> …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벽걸이와 의식용 … <중략> …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 모기장 ;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 침대이불(bedspread)(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 방석커버·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의자덮개 ;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발 매트, 소파 매트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304.92-0000호에 분류함.

연관 키워드 바닥깔개, 실내용품, 발매트

●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물품 ④) ●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97
시행일자	2024년 9월 24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6304.93-0000호
경합세번	제5702.99-0000호
	제5705.00-0000호
	제6304.92-0000호
	제9404.90-0000호
연도	2024
회	제4회
품명	MAT(70 x 180cm)
물품 설명	직물(노출 표면)/충전재(합성섬유 워딩)/합성섬유제 직물 순으로 적층하여 누빔처리하고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도트(dot) 처리된 것.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원단의 특성상 가볍고 단단하지 않아 쉽게 접히는 등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두껍고 단단한 양탄자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도상 “물기 제거, 오염방지, 보온 등”

그 밖의 가정용 실내용품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57류의 바닥깔개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본건 물품은 바닥면이 미끄럼방지 처리돼 주로 바닥 및 소파 위에 까는 물품이며, 침대를 덮도록 의도된 물품이 아니므로 사용 목적상 제9404호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 … <후략>’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 소호 제6304.9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 <중략> …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 … <중략> …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벽걸이와 의식용 … <중략> …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 모기장 ; 베드 넷(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넷을 포함한다) ; 침대이불(bedsread)(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 방석커버·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의자덮개 ;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발 매트, 소파 매트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304.93-0000호에 분류함.

연관 키워드 양탄자, 실내용품, 침구

III. 맺음말

지금까지 바닥깔개의 품목분류와 최근 품목분류위원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질에 따라 다양한 세번으로 분류되며 여러 가지 재질로 혼합돼 있을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데 바닥깔개는 특히 노출 표면이 어떤 재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품목분류위원회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제11류의 바닥깔개는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두껍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제57류의 양탄자류, 제6304호의 실내용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므로 원단의 특성과 그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철판 지우개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교실이나 학원 같은 교육시설에 꼭 있어야 하는 철판. 전통적인 철판은 잘 말린, 밀도 있는 원목판에 연마재를 섞은 검은 도료를 칠해 만들고, 부유한 사립학교나 대학에서는 검은색 천연 슬레이트석을 가공한 돌철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검은 철판은 1970년대까지 널리 쓰였고 이후 철판에 녹색 도료를 입힌 녹색 철판이 보편화됐다. 그러다가 종전의 철판이 분필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 인체에 해롭고, 청소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철판이 도입됐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처럼 전자철판으로 바뀌는 추세다.

‘철판 지우개’라고 하면 두툼한 천으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제품이 생각나는데 한두 번 이상 사용하면 천에 분필가루가 그대로 묻어나 반드시 전용 털이로 털어야만 했다. 이번 호에서는 철판 지우개와 관련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아래와 같은 형태의 철판 지우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중 ‘필통과 지우개’에 해당하는 제3926.10-1000호로 신고했다.

물품은 청색계 방직용 섬유제의 청소포와 플라스틱제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내부에 물을 담아 물을 분사해 닦을 수 있다. 방직용 섬유재료와 플라스틱 손잡이가 함께 있고 각각의 특성이 있어 관련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를 적용해 품목분류한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이 물품의 경우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물통, 분무기는 세척의 부가적인 역할을 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직접적인 세척 역할을 하는 청소포에 있는 것으로 봤다.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뒤틀이포·접시뒤틀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1) 마루뒤틀이포·접시뒤틀이포·면지털이포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나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6307.10-0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AN ERASER	3926.10-1000 (FCN1 0%)	Cleaning cloths	6307.10-0000 (FCN1 0%)

무인 무 수확기 등장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중국의 한 스마트 농장에 중국 최초의 무인 무 수확기가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태블릿 pc로 명령을 내리자, 무인 수확기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밭 이랑을 전진, 무를 뽑아 올림과 동시에 무청을 잘라내 따로 거둬들인다.

농장 관계자는 “무 뽑기, 무청 절단, 운반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계로 하루 수확 비용 5,000 ~ 6,000위안(한화 11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가농업정보화 센터가 개발한 이 무인 무 수확기는 하루 200톤 정도의 무를 거둬들인다. 이는 농민 30 ~ 40명이 해야 하는 작업량에 해당한다. 작업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높아 작물 훼손율이 5%도 안된다고 한다. 농장 관계자는 무 수확뿐 아니라 경작지 정리와 파종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무인 수확기가 할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농촌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용 로봇이 등장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스위퍼 로봇은 파프리카만 수확하기 위해 개발돼 이미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딸기, 오이, 참외 등 수확 전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로봇 시스템은 단순히 수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로봇 기반 수확·운반 연계 기술을 구축해 원예시설 전체에 대한 작물 수확 작업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힘 안 들이고 간편해 유용하지만, 여기서도 일자리 감축 문제가 대두된다.

관세율표에서 산업용 로봇은 제8479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농업도 산업의 일종이지만, 그보다는 협의로 표현되고 있는 제8433호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에 분류될 것이다(「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가 참조).

제8433호 해설서 (A)호에서는 “농작물의 수확기(예 : 예취·채취·수집·적취 …<후략>)”를 예시 설명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승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8호_2024.11.25.

최신개정법령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 관세율을 규정함.
- 나.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 5)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년 9월 7일에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15의7」 및 「별표 22」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세 및 원산지와 관련한 협정의 주요 내용을 규정
 - 1) 필리핀의 영역을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함.
 - 2)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규정하고,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으로 규정함.
 - 3)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발급 방식 및 자율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업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와 작성 방법을 규정함.
 - 4)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 하거나, 필리핀의 관세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직접 현지조사 할 수 있게함.
 - 5)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관세 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함.

6)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직업용구, 전시물품, 운동용품, 상용건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면제되는 세액의 110%까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 15의 7 및 '별표22'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00호, 2024.00.00.)

2. 제정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제정함.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 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주요 내용

-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제4조~제6조)
 -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
 - 관세 등의 징수결정 방법 등
- 납부의 고지(제7조~제9조)
 - 관세 등의 납부고지 방법
 -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방법 등
-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제10조~제19조)

- 수납 확인 방법 및 세금계산서 출력
 -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및 월계 대조
 - 현금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방법 등
- 월별납부(제20조~제34조)
 - 월별납부 요건 및 신청 승인 취소 등
 -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등
 - 월별납부 방법 및 작성시기 등
- 담보관리(제35조~제51조)
 - 담보제공 대상, 담보의 종류 및 담보제공 범위
 - 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 등
 - 포괄담보의 제공 및 사용승인 등
 - 담보의 추가, 변경, 해제 등
- 정부 보관금의 출납(제52조~제61조)
 - 취급은행의 지정, 정부보관금의 수납 및 불출 방법 등
 -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수납확인 등
- 체납관리(제62조~제64조)
 - 독촉, 체납자 관리 등
- 환금금 처리(제65조~제72조)
 - 환금의 신청, 결정, 제세 총당 등
 -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지급미필 환금금의 처리 방법 등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시행 일자 : 2024. 10.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상애 주무관 (☎042-481-7644)
- 제출기한 : 2024.10.00.
- 제출방법 : 이메일(shins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시행일자 : 2024. 00. 00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시행일자 : 2024. 00. 00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시행일자 : 2024. 00. 00

■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시행일자 : 2024. 00. 00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시행 일자 : 2024. 00. 00.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월별 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시행일자 : 2024. 00. 0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간 도서



2024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수출입 통관 업무의 백과사전

세율 및 개정 고시 반영, WTO1가 수록기준 변경, 간이징액환급률표 등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상·하권 p.4,984 | 120,000원



2024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2024년 4월 1일 기준 개정 법령 수록, 관련 고시까지 한 눈에 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p.1,728 | 60,000원



무역금융범죄의 사이클

무역금융범죄 139개 유형 심층분석

이호능·천홍욱·황인욱 공저 | p.590 | 40,000원



2023 관세환급실무

관세환급 실무중심 사례 소개

윤철수·이상학 공저 | p.603 | 50,000원



2023 관세형사법

관세무역 적법절차 준수 지침서

박영기·조재웅 공저 | p.896 | 60,000원

온라인 도서 구매 10% 할인

구매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